



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8길 16
[별지 제33호서식]

공증인 김상호 사무소

(전화) 02)776-6926, 777-6926
(팩스) 02)779-6926

등부 2025 년 제 7886 호

인 증 서



발기인총회의사록

2025. 7. 16. 10:00 주식회사 에이치엘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창립사무소에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다.

발기인 총 수	2 명	이의 인수주식총수	60,000 주
출석발기인수	2 명	이의 인수주식수	60,000 주

발기인

발기인 대표 정미영은 발기인 전원이 상법 및 정관 소정의 소집절차의 단축 또는 생략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발기인이 출석하여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회의 진행상 의장을 선임할 것을 구한바 발기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발기인 대표 정미영을 의장으로 선임하였고 동인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고 의장석에 등단하여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.

제1호 의안 정관 승인의 건

의장은 별지 정관을 낭독하고 축조설명을 하고 그 여부를 묻은 즉, 전원일치로 안대로 승인하다.

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

의장은 이사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고자 전원 일치되어 즉시 투표를 한 즉 다음과 같이 선출되다.

사내이사	정 미 영 (1963.09.14.)
기타비상무이사	박 성 언 (1979.02.23.)
기타비상무이사	권 용 하 (1992.09.11.)

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

의장은 감사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고자 전원 일치되어 즉시 투표를 한 즉 다음과 같이 선출되다.

(단, 감사의 선임에는 상법 제40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)

감 사 이 창 환 (1984.02.23.)

제4호 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

의장은 정관 제33조에 의거 발기인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해야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승인을 구한바 다음과 같이 선출되다.

대표이사 정 미 영 (1963.09.14.)



제5호 의안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 조사보고의 건

의장은 발기인이었던 자를 제외한 기타비상무이사 권용하, 감사 이창환으로 하여금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을 조사보고케 하기 위하여 휴회한다고 선언한 다음 잠시 후 속회를 선언하다.

발기인이 아닌 이사, 감사는 별지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 조사보고서와 같이 조사사항을 소상히 설명 보고한 바, 전원 일치로 이를 승인하다.

의장은 이상으로써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.

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발기인이 다음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다.

2025. 7 . 18 .

주식회사 에이치엘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발기인

정 미 영 (인)



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53길 8, 325동 1403호
(상도동, 래미안상도3차아파트)

발기인

박 성 언 (인)



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3길 10-3, 101동 106호
(방배동, 삼호한숲아파트)

조사보고서

본인은 2025년 7월 16일 본 회사 주식회사 에이치엘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로 선임된바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함.

조사사항 및 조사결과

1.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는 보통주식 60,000주로 2025년 7월 16일 까지 그 전부에 대한 인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.
2. 각주에 대하여 2025년 7월 16일까지 그 발행가액의 납입이 있었음은 주식회사 하나은행 무역센터지점이 발행한 주금납입증명서에 의하여 인정된다.
3.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,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, 재산인수에 관한 사항,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이나 발기인이 받을 보수 등 상법 제290조에 규정하는 사항은 없다.
4. 기타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함이 인정된다.

이상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함.

2025년 7월 16일

기타비상무이사 권 용 하 (인)

감사 이 창 환 (인)

등부 2025 년	제 7886호
인 증	
위 주식회사 에이치엘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	
의	
2025년 07월 18일 자 발기인총회	
의사록에 대하여 발기인 겸 주주 정미영,동 박성언	
의 각 대리인 정미숙 은	
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,	
그 기명날인 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.	
본 공증인은 위 진술과 아래 기재 자료에 의하여 그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	
을 확인 하였다.	
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들의 대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 에 의하여	
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	
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.	
2025년 07월 18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.	
공증사무소명칭	공증인 김상호 사무소
소 속	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
소재지표시	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8길 16
공 증 인	김 상 호
	아
1. 위임장 2. 인감증명서 3. 진술서, 확인서 4. 주주명부	